

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관리번호
------	------	------

1. 신청인 인적사항

①법인명	②사업자등록번호
③대표자 성명	④업태·종목
⑤소재지	

2. 사업연도

⑥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~ 년 월 일	⑦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~ 년 월 일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3.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

⑧결손금액	⑨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
-------	---------------

4.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

⑩과세표준	⑪세율	⑫산출세액	⑬공제감면세액	⑭차감세액 (⑫-⑬)

5. 환급신청세액 계산

⑮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(⑮=⑫)	⑯차감할 세액 [(⑩-⑨)×세율] [⑯≥(⑫-⑭)]	⑰환급신청세액 (⑮-⑯) (⑰≤⑭)

6.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

⑱ 예입처 은행 (본)지점	⑲ 예금종류	⑳ 계좌번호

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8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8호서식)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⑧ 결손금액: 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.
2.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8호서식의 작성방법 2. 및 7.나.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.
3. ⑩ 과세표준 및 ⑬ 공제감면세액: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4. ⑪·⑯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.
5. ⑫ 산출세액: ⑩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⑮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: ⑬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(⑫ 산출세액의 금액)을 옮겨 적습니다.
7. ⑯ 차감할 세액
 - 가. ⑩ 과세표준에서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원미만 금액은 절사)을 적습니다.
 - 나. ⑬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⑬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.
8. ⑰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9. ⑱ 예입처, ⑲ 예금종류, ⑳ 계좌번호란에는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